

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서

의왕도시공사와 (주)바론컨설턴트 (이하 “양 기관” 이라 한다.) 는 민관의 협력으로 상호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,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며 본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·물적 자원을 토대로 상호의 기술·서비스 고도화와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협력내용)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며, 세부 사항은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.

1. (주)바론컨설턴트는 본 협약에 따라 최초 1년의 협약기간 동안 자체 개발한 CAD프로그램 (EG-BIM) 을 의왕도시공사에게 무상으로 제공·설치·초기교육을 지원한다.
2. 공사는 제공받은 CAD프로그램 (EG-BIM) 을 업무 환경에서 시험·활용하고, 프로그램의 기능 개선 및 활용성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.
3. 양 기관은 제1항의 무상공급 기간 종료 전, 해당 프로그램의 무상공급 연장 또는 유상공급 계약을 위한 협의를 성실히 진행한다.
4. 양 기관은 원활한 상호협력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 세미나·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제3조 (신의성실의무) 양 기관은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, 관련 사항에 대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.

제4조 (협약서 변경·추가·해지 등) 양 기관은 협약 변경, 추가, 해지 사유 발생 시 서면으로 통보하며, 상호 합의를 통해 조정한다.

제5조 (기밀유지) 본 협약과 관련된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정보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.

제6조 (협약의 효력 및 이행) 본 협약은 협약체결일부터 효력을 가지며, 최초 1년간 유효하다. 협약 기간 만료 후에는 본 협약에 따른 무상 공급은 종료되며, 제2조 제3항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별도의 무상공급 연장 또는 유상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해지된다.

제7조 (기타)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,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.

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,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5년 월 일

(주)바론컨설턴트
대표 장 종 찬

의 왕 도 시 공 사
사 장 노 성 화